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280호, 2024. 2. 13. 공포, 2024. 8. 14. 시행) 됨에 따라,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·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의 제목 “(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)”를 “(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”을 “생활조정수당”으로, “관하여”를 “관하여 그 밖에”로 한다.

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의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1.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
2. 입원,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

③ 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급희망자의 동의는 유·무선 등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의 신청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4(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) ① (생략)	제9조의4(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의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	1.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
	2. 입원,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
<신설>	③ 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수급희망자의 동의는 유·무선 등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의 신청으로 본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	④ 생활조정수당----- ----- --- 관하여 그 밖에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11